

서울특별시 강북구 통·반 설치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복지도우미 임무 추가로 인해 대민접촉이 활발해진 통장에게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0조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(안 제5조의2 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

제4조의2제5항 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
조직을 둘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16. 4. 29. ~ 2016. 5. 19.) 결과, 의견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결과,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결과,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강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 따른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중 “조례”를 “조례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5조의2(통장추천심사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10조(편의제공) ①·②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</u>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5조의2(통장추천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편의제공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--- <u>조례의</u> -- -----.</p> |